

국회에서 의결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인

2024년 1월 2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 이상민  
행정안전부장관  
(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)

● 법률 제19922호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

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2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) 정당이 「공직선거법」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헌·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헌·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함.

<법제처 제공>